

□ 주요 내용

- (사업 목적)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·정신질환 조기 발견
- (지원 대상)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

< 대상자 기준 >**①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**

※ 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
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※ (증빙서류)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
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
※ (증빙서류)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
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
※ (증빙서류) ▲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

▲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, 입소시설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
⑤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 통해 의뢰된 자

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22~, 부산 등)

※ (증빙서류)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
⑥ 재난피해자(본인, 유가족)

* 유가족범위: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

※ (증빙서류) 피해사실확인서, 피해자 인정결정서,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

⑦ 정신건강복지센터·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

※ (증빙서류) 등록증명서

- (지원내용)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(회당 최소 50분 이상)

- 심리검사*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:1 대면으로 제공

* (예)▲우울의 평가 : PHQ-9(Patient Health Questionnaire-9), ▲불안의 평가 : GAD-7(Generalized Anxiety Disorder-7), ▲자살 위험성의 평가 :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

-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,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*

*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,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

○ (서비스 유형)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

구분	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
1급 유형	○ (국가전문자격)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
	○ (민간자격) 임상심리전문가(한국심리학회), 상담심리사 1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1급(한국상담학회)
2급 유형	○ (국가전문자격)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
	○ (국가기술자격) 임상심리사 1급
	○ (민간자격) 상담심리사 2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2급(한국상담학회)

○ (서비스 제공기관) 배치기준(제공기관의 장* 1명, 제공인력 1명 이상)을 충족한 기관

* (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) ▲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▲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(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,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)

○ (서비스 가격)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이며,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*

- 단,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%

<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>

구분	1회당			총 8회		
	정부 지원금	본인 부담금	합계	정부 지원금	본인 부담금	합계
1급-가유형	80,000원	-	80,000원	640,000원	-	640,000원
1급-나유형	72,000원	8,000원	80,000원	576,000원	64,000원	640,000원
1급-다유형	56,000원	24,000원	80,000원	448,000원	192,000원	640,000원
1급-라유형	40,000원	40,000원	80,000원	320,000원	320,000원	640,000원

<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>

구분	1회당			총 8회		
	정부 지원금	본인 부담금	합계	정부 지원금	본인 부담금	합계
2급-가유형	70,000원	-	70,000원	560,000원	-	560,000원
2급-나유형	63,000원	7,000원	70,000원	504,000원	56,000원	560,000원
2급-다유형	49,000원	21,000원	70,000원	392,000원	168,000원	560,000원
2급-라유형	35,000원	35,000원	70,000원	280,000원	280,000원	560,000원

□ 서비스 제공 절차

①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(1급/2급)을 선택하여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

※ 2025년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지원기간(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) 경과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026년 서비스 신청 가능

②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로 전송

③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*

* 서비스 내용, 이용자 준수사항, 바우처 가격, 본인부담금 납부방법,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

④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,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

⑤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, 서비스 제공(총 8회)

* (계약서 필수포함사항) 계약기간, 제공인력, 계약금액, 계약 해제·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

⑥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,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

※ 시·군·구(보건소)는 교부받은 국도비·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

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

< 서비스 흐름도 >

